

# 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등 실태분석

2017년 상반기 외부강의 실태 분석을 통해 지나친 외부강의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액 사례금 수수 등으로 인한 부패 발생을 예방

## 1 관련근거

-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(권익위 행동강령과-2142호, 2015.9.25.)
- 외부강의등 신고 업무처리지침 알림(감사2016-2924호,2016.11.18.)

## 2 외부강의등 신고 개요

- 신고대상 : 대가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모든 외부강의 등  
※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은 제외
- 신고내용 : 출강일시, 요청사유, 대가금액(실수령액)
- 신고원칙 : 사전신고
  -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도한 외부강의등 수행 금지
  -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을 넘는 고액강의로 수수 금지

### [ 외부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]

구 분	사 장	임 원	그 외 직원
상한액(천원)	400	300	200

\*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

- 상한액 초과 대가를 받은 경우 감사실로 신고하고, 초과 금액을 제공자에게 반환
- 대가를 받는 경우 월3회로 횟수 제한

## 3

## 2017년 상반기 신고 현황

## ○ 신고현황 : 총 14건, 3,838,800원

구분	합 계	강의·강연	발표·토론	심사평가자문의결	기 타
건수	14건	1건	-	13건	-
금액	3,838,800원	478,000원	-	3,360,800원	-

## ○ 직급별

구분	합 계	임원	1급	2급	3급	4급이하
건수	14건	1건	4건	6건	1건	2건
금액	3,838,800원	478,000원	850,000원	2,080,800원	150,000원	280,000원

## ○ 최근 3년 비교

구분	2014년	2015년		2016년		2017년
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
건수	15건	20건	19건	17건	27건	14건
금액	5,243,600원	7,824,380원	7,358,330원	5,943,650원	9,326,000원	3,838,800원

## ○ 신고결과

〈 과다한 외부강의 〉 : 없음

\* 1인 최고 4회 출강하였으나, 월 3회 횟수 넘지 않음

〈 외부강의 대가기준 상한액 초과 수수 〉 : 없음

## 4

## 향후계획

---

-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 자체 점검 실시 : 2017. 9월
- 2017년 하반기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: 2018. 1월